

월요광장

검찰개혁과 기소편의



김하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프랑스 혁명은 형사사법의 역사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소위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의 변화가 그것이다. 규문주의 아래서는 기소권과 재판권이 하나의 국가기관에 집중되어 행사되었지만 탄핵주의 아래서는 기소권과 재판권이 분리되어 서로 다른 기관에 맡겨지게 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절대왕권의 필요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행사되던 국가형벌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도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의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다. '네 죄를 내가 알겠다' 식의 원배판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화된 서구식 재판제도로 바뀐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법자는 검찰에게 소추기관으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소추재판권마저 허용하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기소 여부에 대한 우리나라 검찰의 권한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하였다. 그래서인가? 우리나라 검찰은 창설 이래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검찰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최근 들어서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과 비난이 커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은 몇몇 부도덕한 검사들의 비위사실 때문이라기보다는 검찰이 기소독점권과 기소재판권을 함께 보유하는 제도적 측면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누구든지 기소권을 독점하고 이에 더하여 기소재판권마저 가지게 된다면 스스로 이를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 검찰은 검사동일체라는 조직원리로 무장하여 상명하복이 체질화되어 있다.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검찰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찰의 기소재판권은 정치적 압력과 청탁에 의해 좌우될 위험성도 상존한다.

실제로 검찰은 내란죄의 수괴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전두환을 처음에는 불기소한 적이 있다. 최근 고강도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CJ그룹 총수에 대한 수사가 학백으로 연

결된 이명박 정부의 퇴장과 더불어 가속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검찰의 기소재판권 남용은 비록 권력이나 급력에 굴하여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다.

소위 전관에우라고 표현되는 봐주기 수사도 기소재판권이 남용되는 전형적 사례이다.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수많은 사건 중 극히 일부만을 조사하여 기소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문에 부치는 식의 자의적인 사건처리방식이 수사단계에서 소위 전관으로 예우를 받는 변호사에게 사건이 물리는 현실적 이유가 아니겠는가?

검찰은 이러한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전히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기소재판권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재검토 없이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본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한다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다. 왜냐하면 기소권을 독점한 기관에게 기소재판권마저 허용한다면 그 결과는 독선과 아집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륙법계의 원조격인 독

일 형사소송법은 기소독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검찰은 법률의 파수꾼으로서 세상에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배경에는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하고 있는 기소독점주의라는 제도적 장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독일의 검찰은 원칙적으로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의무가 있고,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반드시 기소하여야 한다. 검찰조직 내외를 막론하고 압력이나 청탁이 개입할 여지를 제도적으로 봉쇄해 놓은 것이다.

물론 독일의 검찰도 우리나라의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절차중지'라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절차중지는 법정형이 1년 미만의 가벼운 죄에 국한되고, 미리 법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검찰개혁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자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여 기소권이 검사들의 자의에 휘둘리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배제해야만 한다. 물론 업무폭증이라는 기소독점주의의 단점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은 합리적인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용의 묘를 살리면 해결된다고 본다.

법조칼럼

변호사의 복제에 관한 규칙(?)



강성두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

최근 법원행정처에서 법관들을 상대로 법정 내 복장간소화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법정 내에서는 법관이나 검사뿐만 아니라 재판에 참여하는 일반 직원들 역시 법복을 착용하고 있는데, 법복 자체를 착용하지 않거나 넥타이만을 매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은 물론 변호사들의 복장 역시 정장 상의 넥타이와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이 많았는지 궁금합니다.

법관 등의 법복 착용에 대한 것은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의 복제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는데, 위 규칙은 법관 등은 법복을 입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색깔은 물론 제식과 모양까지 별도로 두는 등 상당히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사의 경우도 검사의 법복

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한편 변호사의 복장규정은 무엇일까요? 복장 간소화가 논의되고 있는 차에 변호사의 복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는 법관이나 검사가 아니니 위 규칙들에 있을 리 만무하고 혹여 너무 자유로운 복장은 법정 내의 권위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염려와 관련이 있을까 하여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았는데 위 규칙에도 복장과 관련한 규정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변호사법에도 변호사의 복장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복 정장과 넥타이를 매고 있는 변호사의 법정내의 모습은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겐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데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1953년 제정된 '판사·검사·변호사 및 법원서기 복제규칙에 따르면 판사, 검사, 변호사 및 법원서기는 법정에서 별표와 같은 법복을 입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무궁화 무늬 속에 새겨진 색깔을 통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의 복제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위 규칙은 1966년 법관 복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는데, 위 규칙에는

법관은 법정에서 법관 복을 입는다고 규정해 이때부터 변호사의 복제에 관한 규정이 법규에서는 정식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넥타이를 맨 정장을 당연시해 왔던 것은 그동안 유지돼 왔던 관례에 따라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춘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법정예절에 부합한다고 생각 해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몇백 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거의 비슷한 색깔의 양복을 입고 모여 있는 것을 본 아내는 검정색이나 그와 유사한 색깔 외의 양복을 입어서는 안 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거의 정해진 복식(?)에 대한 의심을 해본 적이 없는데 법원에서 먼저 복장간소화 논의를 했다고 하니 법조계도 참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사실 복장간소화 논의가 나온 것은 이미 몇 년 전이었습니다. 상의 정장도 탈의하자는 식의 논의까지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넥타이만이라도 매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이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얘기가 법원에서 공식화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지 변호사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였는지 대충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논의가

더 본격화된 것은 전력수급문제 따라 공공기관의 냉방장치 가동이 문제되면서부터입니다.

땀이 많지 않은 체질이라 남들보다 더위에 덜 민감한 것은 사실이나 사람이 가득 찬 냉방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법정에 앉아있는 것은 곤혹스럽습니다. 뒤에서 작은 선풍기를 틀어준다고는 하나 두꺼운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하고 있는 법관들을 볼 때는 참 고생이 많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지금과 같은 냉방장치가 전혀 없었던 시절의 선배들은 모두 법복을 입고 어떻게 재판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법복을 입은 변호사의 모습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겠구나 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과거에 권위를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내놓는 음식을 얹어서 만들고 지키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변호사들도 법복을 입었던 시절을 지나 이제 정장과 넥타이 차림의 복장까지 탈피하자는 것을 보며 세상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밥의 권위를 세우려한다는 시대의 요구로 들립니다. 아무리 형식에서 탈피하고자 한들 트레이닝복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법정에 들어오는 변호사를 만날 리 아 없겠습니까?

기고

국민 화합을 누가 깨고 있는가



박정필 시인

지난 6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국민대통합'을 실천하기 위한 통합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장에는 전 DJ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한관욱(71) 씨가 임명됐다. 그 임무는 "우리 사회에 깨어진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 대통령께 조언하게 된다."고 한다. 다소 추상적이고 막연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는 없지만 아직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아 예측할 수 없다. 일각 선 지역 이념 계층 세대갈등 등 4대 현안을 해결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으나 미지수이다.

MB정권 때인 2009년 12월에 사회통합위가 첫 발족되어 고건 전 총리가 초대위원장으로 일 년 예산 30억이나 쏟아 부었으나 별 성과없이 유명무실하게 막을 내렸다. 되레 "민간인 사찰 4대강 사업 국정원선거개입 나랏빔 두 배 증가" 등 갈등원인만 만들어 민심

에 역주행했다"고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언론학자 손석춘씨도 "MB가 사회통합을 스스로 저해해 가면서 국민이 낸 세금 수십억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도 전 정권의 전철을 절대 밟지 말길 바란다.

하지만 올해 들어, 우리 사회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 요인들이 여기저기에 고개를 들고 있다. 제아무리 국민통합을 위한 좋은 정책과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갈등과 분열 조장행위를 방치하거나 무겁게 처벌하지 않으면 국민통합은 구두선에 그치고, 끝내 겨레의 큰 비극으로 덮쳐올 것이다. 우선 당장 해야 할 일은 지역갈등을 악의적으로 유발시킨 자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역사왜곡은 물론 허위사실을 날조한 몇몇 극우 세력들 연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금껏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들의 깊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거기에 소금을 뿌려야 되겠는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들은 모 쯤면서 탈북자를 꼬드겨 방송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놓고, 5·18사건 때 북한 특수부대 요원 500명이 넘어와서 광주시민을 살해하고 국군이 죽이는 것처럼 뒤집어 써 왔다는 허위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광주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문졌다.

따라서 불 난 광주시민과 5월 단체가 이모 서 등 5명과 일베 저장소들을 폐쇄고발했다. 특히 필자가 불러온 일은 형사법원 중 변복사가 개여있다는 사실이다. 해마다

1000명 이상 선발된 변호사를 아직도 우리 사회가 엘리트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사회적 균형 감각이 없고 올바른 역사인식과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버리를 논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들은 특하면 망언을 일삼는 일본의 극우인물 하시모토 시장과 뭐가 다른가.

또 특정지역에 대해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독설을 거침없이 배설한 것을 일베 사이트가 퍼 날라고 전국에 도배질하여 사회건강성을 파괴한 점에 국민거부감은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불철주야 전선을 지키고 있는 60만 우리 국군을 우롱하고 모독한 것이다. 얼마나 국군을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엉뚱한 발상을 했을까. 그대 북한군이 때 지어 3·8선을 넘어오고 있을 때 우리 정에 국군을 잠을 잤단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넘어오도록 묵인했다는 걸까. 그들의 의도가 참으로 이상스럽다.

이처럼 이지에 안 맞는 악의적인 사실에

곡으로 광주시민을 자극해 분노를 촉발시켜 무슨 반사회 이익을 노린 걸까. 그들 속셈이 궁금하다. 이와 관련 얼마 전 정홍원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역사를 왜곡한 반사회적 글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힌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다행으로 본다. 이뿐만 아니다. 온라인상에서 설치 되는 "울인코리아, 일베 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댓글이 회끈거리고 화가 치민다. 그곳에는 특정지역에 대한 혐오스런 온갖 오설과 궤변 잡설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럼에도 그것을 단속하거나 폐쇄조치가 없었다는 게 유감이다.

요즘 사회분위기가 경직되어 가고,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들의 행태가 무섭다. 이런 일련의 행위가 갈등이고 분열 아닌가. 도록 묵인했다는 걸까. 그들의 의도가 참으로 이상스럽다.

이처럼 이지에 안 맞는 악의적인 사실에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관리 영망으로 드러난 여수 '검은 비' 사건

지난달 11일 오후 8시경부터 30분간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일대에 내렸던 '검은 비'는 부근 율촌산단의 H사 폐기물이 원인이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순천·광양시,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은 율촌제1산단 내 8개 업체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H사 폐기물에 의한 분

진 때문이라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시료를 조사한 국립환경과학원은 H사 매립지와 '검은 비'에서 검출된 흑연 1년 미만의 가벼운 죄에 국한되고, 미리 법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검찰개혁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자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여 기소권이 검사들의 자의에 휘둘리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배제해야만 한다. 물론 업무폭증이라는 기소독점주의의 단점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은 합리적인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용의 묘를 살리면 해결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번 '검은 비' 사건은 분진 피해를 야기한 H사도 문제지만 감독

권을 가진 환경청과 여수시 등 관계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진이 바람을 타고 빗물에 섞여 내렸다는 것은 폐기물은 물론 분진 관리 자체가 영망이었다는 것은 말해 준다.

특히 주민들이 "지난 1년여간 일대에 검은 비가 지속적으로 내려 관계기관에 호소했지만 제대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환경청은 H사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산하 환경감시단에 보강 조사를 지시했다고 하지만 이 정도 대책은 안 된다. 여수시가 진행하고 있는 농작물 피해 여부 외에 주민들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수질·대기·토양오염 등에 대한 정밀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

처제에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해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잦은 '검은 비'에도 관계기관이 주민들의 민원을 묵살하고, 방치해온 건 엄연히 직무유기다.

불량 음식재료 유통, 수수방관 안 된다

서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재료의 위생상태가 심각하다. 돼지 곱창·족발 등의 유통과정이 불결하고, 여름철의 대표적 인 보양식재인 닭도 대량으로 밀도축쇄 거래되는 등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나외래 불안감을 키우는 꼴이다.

최근 전남경찰에 적발된 유통업자 2명은 허가도 받지 않고, 돼지 4만1000마리 분의 머리와 곱창 등 부산물(4억 8000만 원 상당)을 시중에 불법으로 판매했다고 한다. 또, 전남도 소속 검사관인 공무원 4명은 이들의 불법 유통을 묵인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5월에는 불법 유통업자 6명이 구태, 순천 등지에서 매몰하라는 명령을 받고, 닭을 밀도축한 뒤 전남 동부지역 관공지 인근 280여 개 식당에 대량 납품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부정식품은 이제 축산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파고 들고 있다. 지

난달 전남경찰은 헐뜯어 목은 쌀을 섞어 유통한 양곡업자들을 불찰였다. 주식인 쌀을 비롯할 부식이 불법에, 비위생적으로 거래돼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원상치 허위표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전남 농업의 비교우위로 각광받고 있는 일부 친환경농산물도 자꾸가 나돌아 인증이 취소되는 등 지역농업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또, 전남도 된 음식을 먹어야 건강 유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먹거리가 유통하는 각종 질병으로 인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심각하다.

여름에는 음식물이 상하기 쉽고, 이를 섭취했을 때 탈이 날 우려가 크다. 위생 당국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관리로 주민들의 건강에 더욱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68년 프랑스 파리, 치과에서 신문을 보던 열일곱살 곡에서 필리프 프리는 가슴이 세차게 뛰는 걸 느꼈다. 미국 뉴욕에 세계 최고 높이의 세계무역센터가 건설된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인생의 목표를 정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빌딩 사이를 외줄 하나 놓고 건너겠다는 꿈.

필리프는 이 때부터 건물 완공을 기다리며 자신의 꿈에 동참할 친구들을 모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랑스와 미국을 오가며 공사 현장에 잠입해 건물의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고 파리 노트르담 성당과 시드니 하버 브리지를 외줄로 건너며 전의를 다진다.

6년의 기다리 후 드디어 D데이, 1974년 8월7일 오전 6시45분. 길을 건너 뉴욕 시민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성을 질렀다. 110층, 지상으로부터 411.5m 위에 필리프가 섰다. 그는 아무런 안전 장치도 없이 균형을 잡을 봉 하나만 쥐고 공중을 걷기 시작했다. 2cm 줄 위에 선 그는 두 빌딩 사이 42m를 8번 왕복하고, 줄 위에서 저글링

을 하는 등 기에도 선보인다.

소설가 폴 오스터가 '공중곡예의 예술가'라고 칭했던 필리프의 이야기는 지난 2010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맨 온 와이어 (Man on wire)'를 통해 처음 접했다. 그의 자서전 '나는 구를 위를 걷는다 (To Reach the Clouds)'(이래 출간)를 기반으로 필리프와 친구들의 인터뷰, 당시 촬영한 사진과 아델만 영상, 그리고 그가 '구름 위를 걷기 시작할 때 흐르는 음악이 어우러져 영화는 깊은 감동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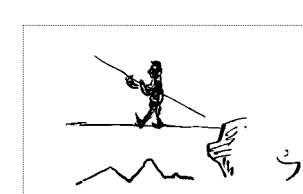
최근 미국인 니콜렌다(34)가 그랜드캐니언 인근 리틀펠로라도강을 외줄타기로 건너는 데 성공했다. 457m 상공에 홀로 선 그는 봉 하나에 의지한 채 396m 길이, 5cm 너비의 밧줄위를 22

분여 건넜다. 7대째 외줄타기를 하는 집안 출신이라는 그는 다음 목표로 엔과 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꼽았다.

그가 이번에 횡단에 성공한 곳은 오래전 필리프가 시도했다 뜻을 이루지 못한 장소다. 필리프의 꿈은 세월을 건너 그에게 이어졌고, 결실을 맺었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kwangju.co.kr

외줄 위의 남자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내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지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